##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세부운영 규정

제정 2018.10.23.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(이하 "규약")제7조, 제29조와 원활한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(이하 "조합")의 세부조직, 기능, 운영과 제반사항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장 운영위원회

제2조(위원구성)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1. 위원장 1인
- 2. 수석부위원장 1인
- 3. 부위원장 2인 이내
- 4. 사무총장 1인, 사무국장 2인
- 5. 기획전략국장 1인, 기획전략부장 2인
- 6. 총무재정국장 1인, 총무재정부장 2인
- 7. 복지후생국장 1인. 복지후생부장 2인
- 8. 교육홍보국장 1인, 교육홍보부장 2인
- 9. 문화체육국장 1인, 문화체육부장 2인
- 10. 대외협력국장 1인, 대외협력부장 2인
- 11. 직렬별 대표 위원 4인

제3조(위원회의 기능)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·집행한다.

-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- 1.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
- 2.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
- 3.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
- 4. 총회,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

- 5.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
- 6.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
- 7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- 8. 회비징수,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9.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10. 상근직원 채용 및 임금 확정에 관한 사항
- 11. 선거관리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구성과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
- 12.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- 13.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
- **제4조(임명 및 해임)** 각 국의 국장, 부장 등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.
- **제5조(임기)** ①각 국장 및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규약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1절 사무총국

- 제6조(사무총국 구성)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.
  - ②사무총국에는 기획전략국, 총무재정국, 복지후생국, 교육홍보국, 문화체육국, 대외협력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두고 국장과 부장을 둘 수 있다.
  - ③사무총국 운영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.
- **제7조(책무)** 사무총국의 구성원은 조합의 선언, 강령,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 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.
- **제8조(수석부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총장, 사무국장의 직무)** ①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며, 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그 업무를 대행한다.
  - ②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 구성원의 임

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.

- ③사무총국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총장에게 있으며 업무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각 국장과의 협의를 통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한다.

## 제2절 집행부

제9조(기획전략국) ①기획전략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부장, 전략부장을 둔다.

- ②기획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노동조합 규약, 규정, 규칙 제ㆍ개정
- 2. 부정부패 척결 및 참 공직 문화 전개
- 3. 조합원의 제 규정, 의무, 의결 사항 및 지시명령 준수사항 점점
- 4.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
- ③ 전략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조합의 정책개발과 사업계획 수립
- 2. 조합의 정책입안 사업
- 3. 각종 자료 조사, 수집 및 연구
- 4. 군측과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
- 5. 제반 법적 대응
- 6. 조합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사무
- 7. 기타 정책에 관한 사항

제10조(총무재정국) ①총무재정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부장, 재정부장을 둔다.

- ②총무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사무국 비품 및 각종 위원회 관리
- 2. 총회, 대의원회, 운영위원회 운영
- 3. 출범식 등 각종 행사 진행

- 4. 조합 및 조합원 관련 동향 및 여론 파악
- 5. 조합 및 군정에 대한 언론 등의 흐름
- 6.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
- ③ 운영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조합원 가입 · 탈퇴 및 조합비 징수
- 2. 예산의 편성과 결산
- 3. 조합원 가입확대
- 4. 조직 강화를 위한 각종 연찬회
- 5. 기타 재정 및 조직에 관한 사항

## 제11조(복지후생국) ①복지후생국장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복지부장, 후생부장을 둔다.

- ② 복지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어려운 동료직원 돕기
- 2. 조합원 휴양시설의 제공
- 3. 조합원 경조사 관리
- 4. 조기 및 상조물품 지원
- 5. 장례식장, 상조회사, 예식장 등과 협약 체결
- 6. 기타 조합원 상조에 관한 사항
- ③후생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조합원 후생복지 사업 발굴
- 2.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
- 3. 조합 활동에 따른 희생자 구제
- 4. "조합원의 목소리" 청취를 통한 조합원의 고충 및 의견 반영
- 5.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### 제12조(교육홍보국) ①교육홍보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부장, 홍보부장을 둔다.

- ② 교육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각종행사 연설문 작성
- 2. 조합원의 노동조합 교육

- 3.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제 및 교육자료 제작
- 4. 노동조합 문화 활성화
- 5.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
- ③홍보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조합 홈페이지 및 게시판 운영
- 2. 조합회보 등 각종 간행물 발행
- 3. 조합 활동 사진, 동영상 촬영
- 4. 조합 활동 자료 수집 및 관리
- 5. 각종 SNS활용 정책방안 수립
- 6.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

제13조(문화체육국) ①문화체육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문화부장, 체육부장을 둔다.

- ②문화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동아리 등 조직의 결성과 활동 지원
- 2. 조합 문화행사 관련 사업 추진
- 3. 지역문화단체와의 연대
- 4.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마당 운영
- 5. 기타 조합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
- ③체육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조합 체육대회 실시
- 2. 체육단체와의 연대
- 3. 군청소속 체육팀 응원
- 4. 기타 조합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

**제14조(대외협력국)** ①대외협력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부장, 협력부장을 둔다.

- ②대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공노총, 기초연맹 등과의 연대
- 2. 경북협의체와 상생협력 활동
- 3. 제 공무원단체 행사 참여

- 4. 전국 공무원단체 활동사항 파악
- 5. 기타 공무원노조에 관한 사항
- ③ 협력부장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의회, 언론, 시민단체 등 대외기관·단체와의 협력
- 2. 지역 주요 시민, 노사 활동사항 협조 및 연대
- 3.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, 자연보호 활동
- 4. 기타 공무원노조를 제외한 제 단체에 관한 사항

#### 제3장 운영과 업무조정

### 제1절 부서운영

- **제15조(사무총국의 업무 집행)** ①사무총국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총장에게 있다.
  - ②사무총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
  - ③각 국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
- 제16조(부서 운영) ①각 국에 속한 일상 업무는 해당 국장이 총괄·관리하며 조합 예산, 회계처리 및 업무의 실무는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.
  - ②국장은 대의원대회,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을 입안한다.
  - ③국장은 해당 업무 집행 전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특히 주요계획과 업무 외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.
  - ④각 국의 업무는 국장의 협조 하에 사무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.
- **제17조(책임)** 국장은 관장 업무와 부서 부장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.

## 제2절 문서처리

제18조(문서의 작성)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국장 또는 부장이 한다.

- ②타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국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**제19조(결재, 시행)** ①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문서등 록대장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.
  - ②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각 국장의 협조 하에 사무총장과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위원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.
  - ③결재권자가 부재 시 수석부위원장, 사무총장, 국장 순으로 대결한다.
- **제20조(접수 및 발신)** 모든 문서는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.
- **제21조(준용)**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, 발신에 대해서도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2조(문서의 보존기간)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- 1.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: 해당기간
  - 2. 조합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: 영구기간
  - 3. 회계문서 : 5년
  - 4. 전 3호 이외의 문서 : 3년
- 제23조(보존문서의 폐기)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. ②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.

#### 제3절 간행물과 도서

- 제24조(간행물) ①운영위원회는 소식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.
  - ②소식지는 홍보부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.
  - ③교재와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서 발행한다.
- 제25조(도서와 신문) ①운영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신문

을 구독할 수 있으며, 도서구입 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.

#### 제4장 회 의

- 제26조(소집) ①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.
  - ②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 -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.
  - ④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국장급 운영위원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.
- **제27조(의결)**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8조(회의록 비치)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- 1.개최일시 및 장소
  - 2.출석한 운영위원
  - 3.회의내용 및 의결사항
  - 4.기타사항
- 제29조(회의록 공개)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조합 홈페이지 및 군청 전자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며, 항상 사무총국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제5장 상근직원

- **제30조(채용)** ①사무총국에는 간사 1명을 두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간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.
  - 1. 노조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

- 2.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노조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
- 3.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
- 4. 조직적인 규율
- 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31조(채용구비서류) 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이력서 1통
- 2. 주요경력증명서 1통
- 3. 건강진단서 1통(보건소 및 병원급 이상)
- 4. 사진(명함판 상반신 탈모) 4매
- 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**제32조(근로계약)** ①간사는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②간사의 채용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.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 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③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33조(근로계약의 해지) ①위원장은 간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때
- 2.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- 3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조합의 비밀을 누설할 때
- 4. 예산의 삭감 또는 채용 사유가 소멸한 때
- 5. 기타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때
- ②간사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34조(복무) ①사무총국 간사의 복무는 예천군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
②사무총국 간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.

**제35조(임시근무자)**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총국 성원 이외에 임시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.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.

제36조(기타)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상관례)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# <u>회 의 록</u>

	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(	)위원회 회의록 [ 차]	
1. 일 시	: ( )		
2. 장 소	:		
3. 참석인원	: 명		
4. 참석자 명 o o	년 		
5. 회의내용			
6. 기타			

# <u>제 기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</u> 월 중 ( )위원회 개최 결과

기록번호 : 제 기 예공노 - 작성일시 :	작성부서 : 사무총국	확인
<ul><li>■ 일시장소 :</li><li>■ 참석대상 :</li><li>■ 회의내용 :</li></ul>		
■ 회의 안건 및 결과		

# 제 차 ( )위원회 참석자 현황

일시: 년 월 일()

직 위	소 속	성 명	서 명	비고